

## 議案検討報告書

1. 発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  
正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年 4月 日

内務委員會

専門委員 安鍾



##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2. 3. 27.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3. 31.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 案 理 由

消防業務가 廣域消防行政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義勇消防隊運營體制를 整備하는 한편 義勇消防隊 運營의 活性化 및 土氣振作을 為하여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것임.

#### 2. 提 案 理 由

- 가. 義勇消防隊 支隊 名稱을 從前에는 ○ ○消防署義勇消防隊 第 ○ ○支隊로 하던 것을 ○ ○消防署義勇消防隊 ○ ○地域 義勇消防隊로 變更하였음. (案 第 3條)
- 나. 義勇消防隊 官署標識 및 懸板 規定을 現行 行政 提示로 되던 것을 標識와 懸板의 規格 및 制式 規定을 新設하였음. (案 第 4條)
- 다. 義勇消防隊員의 任用에 있어 從前에는 管轄區域內에 居住하는 者중 志願하는 者로 規定하던 것을 管轄區域內 居住하는 者중 自願하는 住民으로 管轄區域內에서 安定된 職業을 가진 住民, 健康 狀態가 良好하고 協同心이 강한 住民, 信望이 두터우며 義勇奉公 情神이 強한 住民으로 任用 規定을 強化함으로써 義勇消防隊員의 資質 向上을 기하도록 하였음. (案 第 5條)

- 라. 義勇消防隊員의 任用權者에 있어서 隊長, 婦女隊長, 副隊長, 支隊長은 消防署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任用하고 隊員은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消防署長을 經由 市長이 任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隊長, 副隊長, 婦女隊長, 婦女隊副隊長 地域隊長은 消防署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임용하고 隊員은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消防署長이 任用도록 하였음.  
(案 第 10條)
- 마. 義勇消防隊 檢閱을 年1회에서 年2회로 強化하여 任務遂行 能力を 向上시키고자 함. (案 第 20條)
- 바. 義勇消防隊員이 消防業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出動 또는 動員된 경우에는 手當을 1人1회에 消防公務員 報酬 規程에 規定된 地方消防士 1號俸 債給 月額을 30으로 나눈 金額의 68%를 支給하던 것을 70%로 引上支給도록 함으로써 義勇消防隊員의 士氣를 振作시키고자 함. (案 第 23條)
- 사. 義勇消防隊 活動費 補助 規定을 新設하여 義勇消防隊 業務遂行을 위한 必要 經費는 消防署長이 補助할 수 있도록 하고 區行政等 地域 活動遂行에 必要한 經費는 區廳長이 支援할 수 있도록하여 義勇消防隊 運營의 活性化를 기하도록 하였음.  
(案 第 24條)
- 아. 市長에게 請求하고 支給받던 義勇消防隊員의 災害補償金을 隊長 經由 消防署長에게 請求 및 支給받도록 하였음.  
(案 第 30條)
- 자. 義勇消防隊 相互間의 消防業務 情報交換, 隊員의 福祉向上과 親睦圖謀等 地域 消防 行政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義勇消防隊 聯合會를 構成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하였음.  
(第 31條)

- 차. 聯合會의 活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그 所要 經費는 市에서 聯合會가 區 行政에 必要하고 有益한 地域 活動을 遂行하였을 때에는 그 所要經費를 區에서 支援할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하였음. (案 第33條)
- 카. 管轄區域內 業務 支援 規定을 新設하여 區에서 義勇消防隊 支援 要請이 있을 시는 消防署長(義勇消防隊長)은 積極 參與 支援토록 하였음. (案 第34條)
- 타. 義勇消防隊員이 消防業務로 인하여 身體障礙 發生時 障碍 等級別 補償金을 各 等級別로 地方消防士 4號俸 奉給年額 을 基準으로 支給하던 것을 地方消防士 5號俸 奉給年額을 基準으로 支給토록 하였음.  
(案 別紙 第 9號 身體障碍等級別障礙補償表)

### 3. 檢討意見

本 改正 條例案은 現行 消防業務가 廣域消防行政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義勇消防隊 運營 體制를 整備하는 한편, 義勇消防隊 運營에 活性화를 기하고 隊員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事案으로써

本 改正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現行 支隊 名稱을 地域義勇消防隊로 變更하는 事項이며,

둘째, 義勇消防隊의 標識와 懸板의 規格 및 제식 規定을 새로이  
新設하였음.

셋째, 義勇消防隊員의 任用規定을 強化하는 것으로 從前에는 “管轄區域內에 居住하는 者중 志願者”로 하였으나 이를 調整하여 “管轄區域內 居住하는 者중 自願하는 住民으로 安定된 職業을 갖고 健康狀態가 良好하며 協同心이 강한 信望이 두터운 者”로 變更하였음.

넷째, 義勇消防隊員의 任用權者를 調整하는 것으로 隊長, 副隊長, 婦女隊長, 婦女副隊長, 地域隊長은 從前과 같이 消防署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任用토록 하고 隊員에 있어서 從前에 隊長이 推薦하여 消防署長을 經由 市長이 任用하던 것을 隊長의 推薦에 의하여 消防署長이 任用토록 下向 調整하였고

다섯째, 義勇消防隊의 檢閱을 年 1회에서 2회로 強化하였고,

여섯째, 義勇消防隊員의 手當을 引上 支給하는 内容으로 隊員이 消防業務 遂行上 出動, 動員된 경우 1人 1회에 消防公務員 報酬規定에 의한 地方消防士 1號俸 債給 月額을 30으로 나눈 金額의 68% 支給하던 것을 70% 引上 支給하는 것임.

$$\text{※ } 243,000 \div 30 = 8,100$$

- 現 行 : 8,100원의 68% → 5,510원 □ 160원 増
- 調 整 : 8,100원의 70% → 5,670원

일곱째, 義勇消防隊 活動費 補助 内容으로 義勇消防隊의 關聯業務遂行시 필요한 經費를 消防署長이 補助할 수 있게 하고, 區行政等 地域 活動 遂行에 필요한 경비는 區廳長이 支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여덟째, 義勇消防隊員의 災害補償金 請求 内容으로 現行 市長에게 請求하고, 支給 받던 것을 隊長을 經由 消防署長에게 請求 및 支給을 받도록 하였으며,

아홉째, 義勇消防隊 相互間의 消防業務 情報交換, 隊員의 福祉

向上과 親睦圖謀等 健全한 消防活動을 하도록 義勇消防隊 聯合會를 構成토록 했고 本 聯合會에 대한 所要經費를 市와 區에서 支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열번째, 義勇消防隊員 身體 障碍 補償金의 等級을 調整하는 것으로 現行 地方消防士 4號俸 傅給年額 基準을 5號俸으로 上向 調整하는 案이 되겠음.

※ 月 282,000원 → 月 295,000원 (13,000원 引上)

本 改正案을 살피건데 現行 消防業務의 節次上 問題點을 補完 改善하였고, 自體 消防業務의 權限을 強化하는 한편, 隊員의 士氣 振作 方案을 보다 具體化 한 것으로 思料되는 바,

다만, 義勇消防隊 聯合會의 새로운 構成 問題와 各種 豫算의 支援 對策이 別途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災害補償金 內容에 있어서는 現 社會 構造上 消防業務에 危險性과 特殊性이 潛在되어 있음을勘案할 때 災害補償制度의 改善은 必要한 措置로 思料됨.

## 議案検討報告書

1. 発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奨學金支給條例中 改正 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 年 4月 日

内務委員會

専門委員 安鍾



## 大田直轄市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案中改正條例案

### 檢討報告

이 條例案은 1992. 3. 27.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3. 31.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案理由

消防業務가 廣域消防行政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義勇消防隊子女  
獎學金體制를 整備하고 義消隊 運營의 活性化 및 土氣振作을 위  
하여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가. 義勇消防子女獎學生을 消防署長이 市長에게 推薦하던 것을  
隊長이 消防署長에게 推薦토록 推薦權者를 調整하였고 推薦  
範圍를 獎學生數(15名)의 2倍數 範圍內에서 推薦하던 것을  
義勇消防隊 1個隊象 2名 範圍內에서 推薦토록 하였음.  
(案 第 3條)

나. 獎學生 選拔權者를 市長에서 消防署長으로 調整하고 消防署長  
은 選拔 結果를 市長에게 報告하는 規定을 新設하였음.  
(案 第 4條)

다. 奨學生의 定員이 從前에는 消防署當 15名(大學生 3名, 中·高等學生 12名)이었던 것을 署別 義勇消防隊員 및 婦女義勇消防隊員의 全體數에 따라 差等 調整하여 60-110名에 奖學生 數를 10名으로 하고 隊員 20名當 1名씩을 增員도록 하였음.  
(案 第 5條)

라. 奖學生이 學業에 精進하고 品行이 他의 模範이 되도록 하는 奖學生 指導, 管理權者를 市長에서 消防署長으로 調整하였음.  
(案 第 9條)

### 3. 檢討意見

本 改正案은 義勇消防隊員에 대한 土氣를 振作시키고 義勇消防隊 運營을 보다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隊員子女獎學金 支給體制를 整備하는 한편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事案임.

改正되는 主要 内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義勇消防隊 子女 奖學生의 推薦 方法으로써 從前에 消防署長이 市長에게 推薦하던 것을 隊長이 消防署長에게 推薦도록 하였고 奖學生 推薦 數도 從前 15名의 2倍數 範圍內에서 義勇消防隊 1個隊當 2名 範圍內로 推薦도록 하였으며(案 第3條)

둘째, 奖學生 選拔權者를 市長에서 消防署長으로 調整하는 한편, 奖學生의 定員을 從前 消防署當 15名에서 署別, 隊員의 全體數에 따라 差等 適用도록 調整하였음.(案 第5條)

또한, 奨學生의 指導管理權者를 市長에서 消防署長으로 調整  
하여 效率的인 奖學生 管理가 되도록 하였음. (案第9條)

以上과 같이 調整 됨으로써 義勇消防隊 子女의 奖學金 受惠幅이  
擴大되고 奖學生 先發 業務가 消防署長으로 簡素化 되어 義勇  
消防隊員의 土氣振作과 함께 效率的인 隊員 管理가 될 것으로  
사료됨.